

##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940호, 「**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」은 '2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 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 1. 제안이유

-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비용자성사업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2021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주거지원계정)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2,871백만원에서 7,860백만원으로 4,989백만원 증가하였고, 공공예금이자수입 금액이 당초 49백만원에서 117백만원으로 68백만원 증가함
-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94백만원에서

6,151백만원으로 6,057백만원 증가하였음

- 또한 지출계획상 비용자성사업에 아동바우처가 신설되면서 사업비 1,000백만원이 추가되었으나, 3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므로 당초 6,000백만원에서 5,000백만원으로 1,000백만원 감액조정함

○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 (B-A)
계	11,894	16,951	5,057
공공예금이자수입	49	117	68
민간융자금회수수입	6,943	6,943	-
기타회계전입금	1,991	1,991	-
기타그외수입	40	40	-
예치금 회수	2,871	7,860	4,989

<지출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 (B-A)
계	11,894	16,951	5,057
비용자성 사업	6,000	5,000	△1,000
용자성 사업	5,800	5,800	-
여유자금예치	94	6,151	6,057

### Ⅲ. 검토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가 당초 28억 7,100만원 보다 49억 8,900만원 증액된 78억 6,000만원으로 계획변경되고,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(4,900만원)보다 6,800만원 증액된 1억 1,700만원으로 계획변경함에 따라,
-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(9,400만원)보다 6,443.6%, 60억 5,700만원 증액된 61억 5,100만원으로 변경하고, 정책사업인 **주거복지 수준 제고**의 경우에는 당초 (118억원)보다 △8.4%, △10억원 감액된 108억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 책 사 업	당 초 ( A 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액 ( C = B - A )	증 감 륜 ( D = C / A )
지 출 합 계	11,894	16,951	5,057	42.5
주 거 복 지 수 준 제 고	11,800	10,800	△1,000	△8.4
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94	6,151	6,057	6,443.6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서울특별시, 주택정책과-4588 ('21.10.12)

- 관련 법령 등은 “정책사업 지출금액”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 - 동 계정의 경우,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보다 6,443.6%(60억 5,700만원) 증액하려는 사안으로서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됨

○ 다만, 관련 법령 등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

- 동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**주거 복지 수준 제고**, ②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으로 기재하여야 하나, “비용자성사업, 용자성 사업, 여유자금예치”로 임의기재하여 제출한 바,
- 부정확한 정책사업명을 안전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